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7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김선교・구자근・김성원

김위상 • 송석준 • 박덕흠

최수진 • 김예지 • 서천호

윤상현 · 김상훈 · 신성범

강대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1조제5항"을 각각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
	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확산
	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
	구개발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
	<u>· 이행 지원</u>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업무</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두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자격
	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u>④</u> ~ <u>⑦</u> (생 략)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4. <u>제11조제5항</u>을 위반하여 치 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5. <u>제11조제5항</u>을 위반하여 치 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② (생 략)
-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저 위탁)① ~ ③ (생 략) <신 설>

	<u> </u>
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전	<u></u>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	7
항까지와 같음)	
세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 \
등) ①	_
	_
	_
	-
	_
	_
	_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1조제6항</u>	-
	-
5. <u>제11조제6항</u>	-
	_
② (현행과 같음)	
세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다	<u> </u>
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여	ᅨ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1조제5항</u> 을 위반하여 치	2. <u>제11조제6항</u>
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	2. <u>제11조제5항</u>
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